

2021년도 제1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8.(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5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62건(안건번호 제2021-70321호~7147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번~3번, 5번~10번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가결함.
순번 4번은 심의일 현재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순번 927번은 직접 출연한 부분에 대한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정이용으로 볼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순번 984번은 일부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으나 직접 작성 내지 편집한 분량이 상당하고, 비영리 목적의 이용인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부결함.
순번 1147번~1155번은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2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6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5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의 저작물명, 5쪽의 특정 업체명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저작물명, 저작물 정보, 저작권사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6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70321호~7147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0321호~70323호는 카페, 블로그에서 외국 애니메이션 ‘☆☆☆☆☆☆’, ‘★★★☆☆’ 등을 각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0324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화부터 ●●화까지 총 20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 확인 결과 해당 게시물은 2021. 6. 24.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되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0325호~7033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 만화 총 6건을 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70321호~703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심의일 현재 게시자에 의하여 이미 삭제된 건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0321호~7033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7124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방송 '○○○○'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안임.
게시자명 및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게시자는 기록 또는 홍보 목적으로 해당 방송에 본인이 출연한 분량을 편집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7124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지난번 심의했던 건과 동일한 사안임. 방송의 출연자인 게시자가 관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B 위원: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임.

- C 위원: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으로 판단됨.
- D 위원: 같은 생각임. 해당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71247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130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방송 '◇◇◇◇'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안임.
 게시자는 대중가수 '◆◆◆'의 팬 활동의 일환으로서 가수의 해당 방송 출연분을 복제하여 전송 중임. 영상물 이외에도 직접 편집 및 보정한 캡처 사진, 직접 작성한 가수의 활동 및 방송에 관한 글 등이 함께 게재되어 있음.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7130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작가 등 방송 관계자일 가능성은 없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블로그 전체글 목록을 제시하면서)정확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 팬으로 보임. 카테고리명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자는 블로그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가수의 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해당 카테고리의 글은 모두 유사한 형식으로, 해당 가수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내어 이용하고 있음.
- A 위원: 이용하고 있는 분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광고도 전혀 없고 방문자 수도 많지 않음. 영리 목적이 없는 블로그로 판단됨.
- D 위원: 권리자의 직접 권리행사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적합한 사안인지 의문임.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음.
- A 위원: 팬 블로그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활동 내용을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된 비영리적인 게시물이라는 점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임.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중 일부는 유튜브나 네이버TV를 통해 권리자가 제공하고 있는 합법적인 영상과 동일함.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재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후 직접 업로드하였음. 저작권법 준수 안내를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해당 카테고리 내 다른 게시물을 제시하면서)해당 게시물의 영상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전송 중단되었음.

- D 위원: 방송의 일부를 이용 중인 것은 사실이나, 직접 편집 내지 작성한 분량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영상은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이용이 가능해 보임. 저작권법 준수 안내를 위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영상 자체의 합법 시장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결 의견임.
- A 위원: 동의함. 팬에 의해 상당 부분 직접 편집 내지 작성된 게시물으로,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건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출석위원 중 3명 위원이 부결, 1명 위원이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으므로 안전번호 제2021-71304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70331호~71246호, 제2021-71248호~71303호 및 제2021-71305호~7147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출판,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Alcohol-Free'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70487호는 2021. 6. 9.자 신곡 2.7 GB를 14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Alcohol-Free'는 가수 '트와이스'가 2021. 6. 11. 발매한 앨범의 수록곡으로 2021. 6. 9. 선공개되었음.

(영화 '루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1093호는 2021. 6. 17.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93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간 떨어지는 동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1-71447호는 2021. 5. 26.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인 tvN 드라마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75포인트에 판매 중임. 2021. 6. 9.자 방영분 한화 전체 분량 제공 중임.

안건번호 제2021-71467호~71475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임.

이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70331호~71246호, 제2021-71248호~71303호 및 제2021-71305호~7147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중복 심의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0331호~71246호, 제2021-71248호~71303호 및 제2021-71305호~71466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71467호~71475호는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1247호, 제2021-71304호 및 제2021-71467호~7147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70321호~71246호, 제2021-71248호~71303호 및 제2021-71305호~7146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6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